

2022 세종시교육청-세종교총 교섭·협의(2차)

장	조	항	세종교총 교섭협의 요구안	2차 합의안
전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함)과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 이라 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22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세종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함)과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 이라 함)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22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세종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 장 교 권 보 호	1		제1조 【교권침해 피해 교원 적극 보호】 교육청은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 위기 학생 분리와 출석정지 등으로 피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교육청은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 분리 등 피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2		제2조 【민사·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확대】 교육청은 소속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소속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1	제3조 【무혐의 교원 구제책 마련】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교원이 최종 조사 결과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입증될 경우, 해당 교원의 상담 및 심리 치료와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치유책을 행정적·경제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한다.	교육청은 교권침해로 결정된 경우 해당 교원의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2	교육청은 악의적인 민원인의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통하여 각종 민·형사사건에 연루된 교원이 최종 조사 결과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입증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무고혐의로 고발 하도록 노력한다.	—
	4	1	제4조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보호 강화】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2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하여 세종교총의 조사 요구가 있을 때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 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하도록 한다.	교육청은 각종 제보 등 교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교육청은 세종교총으로부터 교권 침해에 대한 사례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통보한다.	
		4	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서 전화 연결음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인의 전화폭언을 예방하도록 지도한다.	교육청은 전화 연결음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인의 전화폭언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5	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한다.	—
	1		제1조 【교원인사관리원칙 제·개정위원 참여보장】 교육청은 교원인사관리원칙 제·개정을 위한 T/F팀 구성 시 세종교총에서 추천한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무 여 건 및 교 원 인 사 제 도 개 선	2		제2조 【승진 및 전보 가산점 제도 개선 절차 마련】 교육청은 승진 및 전보 가산점 제도 개선 논의 시 공청회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추진 시 관련 교사들의 신뢰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당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청은 승진 및 전보 가산점 제도 개선 논의 시 공청회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추진 시 유예기간 등 관련 교사들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3		제3조 【장기 별거부부 교원 대안 마련】 교육청은 장기별거 부부 교원에 대한 고충 해소를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3조 【장기 별거 교원 고충 해소】 교육청은 장기 별거 교원에 대한 고충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		제4조 【전문직 전직 비율 제한】 교육청은 전문직 계열(장학사, 연구사)에서 승진(교감)하는 비율이 높지 않도록 전문직 계열의 전직 비율을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
	5	1	제5조 【전문직 임용 시 기관별, 업무별 전문성 있는 전문직 배치】 교육청은 전문직 임용 시 기관별, 업무별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초·중등 전문직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2	교육청은 학교급별 체육 담당 전문 인력(장학사 등)을 각각 배치하여 학생의 신체·심리·정서 발달 특성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체육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
	7		제7조 【차등 성과급 폐지 및 수당으로의 전환 지급】 교육청은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육청은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한다.
	8		제8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10		제10조 【교감 전보제도 개선】 교육청은 교감의 전보제도 개선을 위하여 근속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학급규모에 따른 순환 전보로 규정을 마련한다.	—
	12		제12조 【보건·영양·사서교사의 직무연수과정 개발 및 확대】 교육청은 보건·영양·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과정을 개발하고 기존의 연수 과정은 심화한다.	교육청은 보건·영양·사서교사의 연수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13		제13조 【업무중심의 표창 개선】 교육청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포상이 업무중심이 아닌 학생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교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포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청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포상이 업무중심이 아닌 학생의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교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포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14		제14조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개선】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인사 및 채용, 복무관리는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하여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청은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 인사 및 채용, 복무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5		제15조 【교육비 지원 업무 지자체로 이관 개선】 교육청은 매년 학부모가 지자체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	—

제3장 교원 의 교 육 활 동 지 원 보 장	2	제2조 【학교 내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비책 마련】 교육청은 학교 내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고충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교육공무직 파업시 교원이 이를 대체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청은 학교 내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고충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3	제3조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명시】 교육청은 「노동조합법」상 학교가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한다.	—
	5	7 교육청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증진 업무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직 교사 증치 기준에 해당 분야를 포함한다.	교육청은 학교체육활성화와 업무 담당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직교사 증치 기준에 해당 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8 교육청은 교원과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해 법률적 근거에 의거한 기준을 제시한다.	교육청은 교원과 교육행정직의 복무에 대해 법률적 근거에 의거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공무직은 협약에 따라 복무 기준을 제시한다.
제4장 교원 단 체 활 동 보 장 및 지 원 확 대	1	2 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교원 인사발령사항	—
	3	제3조 【표창 추천】 교육청은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 추천 시 교원단체에서 약간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
	4	1 제4조 【교원단체 교육 행사 지원】 교육청은 세종교총의 교육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검토·실시한다. 교육청은 세종교총에서 추진하는 교원·학생· 학부모 대상 사업 및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지원한다.	교육청은 세종교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세종 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청은 세종교총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총 홍보를 위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청은 세종교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교육청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종 회의에 세종교총 소속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교육청과의 교섭·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2. 회장단 회의, 이사회, 대의원회, 분회장 회의 3. 교원보호위원회, 교원윤리위원회, 현장교육 연구대회, 심사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4. 한국교총 대의원회 및 이사회(한국교총 대의원과 이사만 해당)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종교총 해당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 교육청과의 교섭·협의회 교섭위원 참석 2. 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참석 3. 한국교총(세종교총) 대의원회(연1회)
		4 교육청은 교원단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신규 교원과 전문직 집합 연수 시 세종교총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교육청은 교원단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신규교원 집합연수 시 세종 교총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본 합의서는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합의서는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1 제2조 【정책협의회 운영】 교육청과 세종교총은 교섭·협의 이행과 교육 현안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정책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다.	교육청과 세종교총은 교섭·협의 이행과 교육 현안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정책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다.

	2	정책협의회 안건은 상호 2주일 전에 통보한다.	정책협의회 안건은 상호 2주일 전에 통보한다.
3	1	제3조 【이행노력 및 이행방법】 교육청은 세종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교육청은 교섭·협의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청은 세종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교육청은 교섭·협의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교육청은 이 합의서의 내용을 직속기관장, 학교장에게 배포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안내한다.	교육청은 이 합의서의 내용을 직속기관장, 학교장에게 배포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안내한다.
	3	교육청과 세종교총은 이 합의서 내용 중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교육청과 세종교총은 이 합의서 내용 중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4	교육청은 세종교총에서 미 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교육청은 세종교총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이행될 수 있도록 재안내한다.
4		제4조 【보충합의】 교육청은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련된 조례와 규칙 및 훈령의 제정·개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의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쌍방의 합의로 보충합의를 할 수 있다.	교육청은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련된 조례와 규칙 및 훈령의 제정·개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의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쌍방의 합의로 보충합의를 할 수 있다.
5.		제5조 【합의서 보관】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세종교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세종교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2. 14.



세종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우태제

우태제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최근세

최근세